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



동 작 구

2017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5
○ 결산검사 경과	8
○ 결산서(요약)	9
세입·세출결산서	11
기금결산서	14
재무제표	15
예산의 성과보고서	19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보고서	20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1
○ 개선 및 권고사항	23
○ 건의사항	37
○ 수범사례	47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018 년 4월 2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작구 의회로부터 동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27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동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동작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작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성근

검사위원 고성삼

검사위원 진광희

검사위원 최성민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3. 27. — 2018. 4. 25. (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표위원	김성근	결산검사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검토
검사위원	고성삼	재무제표 검토 총괄, 세입·세출결산내역 검토
검사위원	진광희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등 검토
검사위원	최성민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등 검토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본 청 (공단 포함)	3.27 ~4.6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의 회	4. 4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보 건 소	4.9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기 타 현 장	4.10~4.11	보건소 사당분소, 동작자원봉사은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상황, 건전성 검토
의견서 작성 및 검 토	4.12~4.25	검사사항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수검기관 의견 수렴, 최종 의견서 및 답변서 등 검토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결 산 서 (요 약)

1. 세입 · 세출 결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581,918,868,019	489,267,136,348	92,651,731,671	51,229,509,294
일반회계	566,974,949,796	482,075,372,378	84,899,577,418	43,576,237,721
특별회계	14,943,918,223	7,191,763,970	7,752,154,253	7,653,271,573
의료급여기금	702,022,599	537,733,320	164,289,279	65,456,599
주차장	14,241,895,624	6,654,030,650	7,587,864,974	7,587,814,974

○ 차인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396,242,950원, 사고이월 13,880,227,595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145,751,83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29,509,294원 입니다.

나. 예산 및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합 계	515,599,423,000	555,941,353,500	581,918,868,019	489,267,136,348
일반회계	502,501,637,000	542,829,037,500	566,974,949,796	482,075,372,378
특별회계	13,097,786,000	13,112,316,000	14,943,918,223	7,191,763,970
의료급여기금	639,566,000	639,566,000	702,022,599	537,733,320
주차장	12,458,220,000	12,472,750,000	14,241,895,624	6,654,030,650

○ 예산현액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40,341,930,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555,941,353,500	624,674,669,899	581,918,868,019	42,755,801,880	1,419,575,870	41,336,226,010
일반회계	542,829,037,500	595,204,538,176	566,974,949,796	28,229,588,380	1,125,012,290	27,104,576,090
지방세	73,291,000,000	77,788,924,640	76,818,883,240	970,041,400	245,184,490	724,856,910
세외수입	47,194,184,000	78,270,644,391	51,011,097,411	27,259,546,980	879,827,800	26,379,719,180
지방교부세	9,536,050,000	11,443,247,440	11,443,247,440			
조정교부금 등	111,529,199,000	126,443,480,290	126,443,480,290			
보조금	210,492,520,000	210,472,155,590	210,472,155,590			
보전수입 등및내부 거래	90,786,084,500	90,786,085,825	90,786,085,825			
특별회계	13,112,316,000	29,470,131,723	14,943,918,223	14,526,213,500	294,563,580	14,231,649,920
의료급여	639,566,000	841,421,509	702,022,599	139,398,910		139,398,910
주차장	12,472,750,000	28,628,710,214	14,241,895,624	14,386,814,590	294,563,580	14,092,251,010

라.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555,941,353,500	489,267,136,348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33,397,746,607
일반회계	542,829,037,500	482,075,372,378	33,276,470,545	19,396,242,950	13,880,227,595	27,477,194,577
일반 공공 행정	50,406,530,950	44,070,819,510	4,006,094,455	3,347,280,000	658,814,455	2,329,616,985
공공질서 및 안전	965,326,000	547,310,770	273,092,000	258,592,000	14,500,000	144,923,230
교육	9,300,491,000	8,947,287,677				353,203,323
문화 및 관광	10,648,717,160	9,286,694,307	576,845,140	115,000,000	461,845,140	785,177,713
환경보호	30,359,368,000	26,720,027,260	2,072,408,990	693,000,000	1,379,408,990	1,566,931,750
사회복지	260,490,301,080	237,782,006,373	13,836,352,640	8,053,425,650	5,782,926,990	8,871,942,067
보건	15,609,768,000	13,742,296,187	38,157,480		38,157,480	1,829,314,333
산업·중소기업	4,692,991,650	2,465,602,940	1,882,885,300	1,680,857,300	202,028,000	344,503,410
수송 및 교통	11,015,860,850	9,416,987,280	645,382,620	522,000,000	123,382,620	953,490,950
국토 및 지역개발	38,684,922,810	26,513,256,374	9,758,352,920	4,726,088,000	5,032,264,920	2,413,313,516
예비비	3,613,409,000					3,613,409,000
기타	107,041,351,000	102,583,083,700	186,899,000		186,899,000	4,271,368,300
특별회계	13,112,316,000	7,191,763,970				5,920,552,030
의료급여	639,566,000	537,733,320				101,832,680
주차장	12,472,750,000	6,654,030,650				5,818,719,350

2. 기금 결산서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 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60,002,819,241	17,525,775,159	12,618,084,397	64,910,510,003
통합관리기금	14,955,501,019	286,941,003		15,242,442,022
공용 및 공공의 청사건립기금	24,312,716,933	10,847,644,035	7,022,053,715	28,138,307,25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35,280,895	271,167,728	296,000,000	1,310,448,623
중소기업육성기금	5,262,562,662	3,486,143,352	3,468,007,000	5,280,699,014
자활기금	858,776,795	312,893,271	70,000,000	1,101,670,066
장애인복지기금	1,047,429,499	18,769,317	21,564,640	1,044,634,176
노인복지기금	1,656,705,440	29,902,827	33,150,000	1,653,458,267
양성평등기금	1,013,902,001	18,153,931	17,888,492	1,014,167,440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1,212,071,144	21,894,282	19,349,200	1,214,616,22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819,548,297	46,154,816	15,053,000	850,650,113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227,957,577	105,559,416	90,366,840	1,243,150,153
옥외광고정비기금	2,251,652,844	545,856,687	528,115,350	2,269,394,181
도로굴착복구기금	1,118,518,206	724,883,366	630,982,450	1,212,419,122
재난관리기금	2,208,288,359	718,099,322	212,887,000	2,713,500,681
식품진흥기금	721,907,570	91,711,806	192,666,710	620,952,666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증감율)
자 산	1,703,451	1,649,927	53,524	3.24
Ⅰ. 유 동 자 산	188,670	180,283	8,387	4.65
Ⅱ. 투 자 자 산	16,913	17,451	△538	△3.08
Ⅲ. 일 반 유 형 자 산	211,451	182,231	29,220	16.03
Ⅳ. 주 민 편 의 시 설	330,950	315,069	15,881	5.04
Ⅴ. 사 회 기 반 시 설	922,935	922,821	114	0.01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2,532	32,072	460	1.43
부 채	40,124	46,993	△6,869	△14.62
Ⅰ. 유 동 부 채	9,054	14,207	△5,153	△36.27
Ⅱ. 기 타 비 유 동 부 채	31,070	32,786	△1,716	△5.23
순 자 산	1,663,327	1,602,934	60,393	3.77
Ⅰ. 고 정 순 자 산	1,470,818	1,424,839	45,979	3.23
Ⅱ. 특 정 순 자 산	63,703	58,604	5,099	8.70
Ⅲ. 일 반 순 자 산	128,805	119,491	9,314	7.79

2017년 회계연도 말 동작구의 자산은 1,703,45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1,649,927백만원 보다 53,524백만원(3.2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반유형자산 등 자산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88,67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87백만원(4.65%)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품, 미수세외수입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2017년 회계연도 말 동작구의 부채는 40,12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46,993백만원보다 6,869백만원(14.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9,05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153백만원(36.27%)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유동부채 등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나.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1) 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증감율)
I.	사 업 순 원 가 (가 - 나)	121,971	80,591	41,380	51.35
가.	사 업 총 원 가	342,392	304,485	37,907	12.45
나.	사 업 수 익	220,420	223,894	△3,474	△1.55
II.	관 리 운 영 비	108,367	102,408	5,959	5.82
III.	비 배 분 비 용	9,369	12,201	△2,832	△23.21
IV.	비 배 분 수 익	22,093	15,708	6,385	40.65
V.	재 정 운 영 순 원 가 (I + II + III - IV)	217,614	179,492	38,122	21.24
VI.	일 반 수 익	246,332	217,381	28,951	13.32
VII.	재 정 운 영 결 과 (V - VI)	△28,718	△37,889	9,171	24.20

2017회계연도 동작구의 사업순원가는 121,971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08,367백만원, 비배분비용 9,369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22,093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17,614백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460,12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1,033백만원(9.79%)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민간보조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 성질별 분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증감율)
인 건 비	110,647	103,530	7,117	6.87
운 영 비	89,277	69,911	19,366	27.70
정 부 간 이 전 비 용	8,731	7,479	1,252	16.74
민 간 등 이 전 비 용	238,372	222,701	15,671	7.04
기 타 비 용	13,100	15,473	△2,373	△15.34
비 용 총 계	460,127	419,094	41,033	9.79
자 체 조 달 수 익	144,754	132,691	12,063	9.09
정 부 간 이 전 수 익	340,942	323,200	17,742	5.49
기 타 수 익	3,150	1,092	2,058	188.46
수 익 총 계	488,846	456,983	31,863	6.97
재 정 운 영 결 과 (비 용 - 수 익)	△28,718	△37,889	9,171	24.20

수익은 488,846백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31,863백만원(6.97%) 증가하였고,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144,75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63백만원(9.09%)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임시세외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340,94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742백만원(5.49%)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17회계년도 동작구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28,71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171백만원(24.20%)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민간보조금 비용 등의 증가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㉔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㉔=㉔+㉔-㉔	의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발생액 ㉔	소멸액 ㉔		
합 계	23,214,583,180	7,960,759,682	8,231,240,933	22,944,101,929	3,522,485,800
일반회계	11,434,946,030	760,495,880	1,266,163,900	10,929,278,010	179,215,800
기금	11,779,637,150	7,200,263,802	6,965,077,033	12,014,823,919	3,343,270,000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740,677,990	508,554,957	457,672,748	791,560,199	45,00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10,781,190,000	6,523,893,288	6,368,253,288	10,936,830,000	3,237,620,00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11,169,160	15,053,000	35,028,440	91,193,720	
식품진흥기금	146,600,000	152,762,557	104,122,557	195,240,000	60,650,000

4. 예산의 성과보고서

동작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동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10개의 비전·전략목표와 총 71개의 정책사업목표, 18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 성	미달성			
계	10	71	188	43	117	28	489,267	446,179	43,088
감 사 담 당 관	1	1	5	0	4	1	55	56	△1
일 자 리 경 제 담 당 관	1	2	7	3	3	1	10,833	11,091	△258
행 정 국	1	19	45	10	29	6	131,471	118,814	12,657
기 획 재 정 국	1	7	20	6	12	2	26,269	32,048	△5,779
복 지 환 경 국	1	14	34	9	18	7	252,910	232,766	20,144
도 시 관 리 국	1	7	14	3	10	1	11,935	10,721	1,214
안전건설교통국	1	6	21	3	16	2	22,700	23,733	△1,033
행 정 타 운 건 립 추 진 단	1	2	5	0	4	1	14,749	0	14,749
보 건 소	1	12	34	9	18	7	15,280	13,690	1,590
의 회 사 무 국	1	1	3	0	3	0	3,065	3,259	△194

5.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보고서

(단위 :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액 현재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액 현재 ㉡ = ㉠ + ㉢ - ㉣
		증가액 ㉢	지출액 ㉣	
합계	23,196,566,166	6,729,343,926	7,145,702,630	22,780,207,462
보증금	54,957,935	23,814,880	12,375,947	66,396,868
보관금	23,141,608,231	6,705,529,046	7,133,326,683	22,713,810,594
잡종금 등 기타	-	-	-	-

6.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가.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도별	전년도말액 현재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액 현재 ㉡ = ㉠ + ㉢ - ㉣
		증액 ㉢	감액 ㉣	
합계	1,463,658,717,313	75,965,367,040	10,276,618,259	1,529,347,466,094
행정재산	1,436,837,646,545	58,366,059,129	9,822,928,259	1,485,380,777,415
공용재산	588,278,698,018	6,949,801,680	562,782,867	594,665,716,831
공공용재산	848,558,948,527	51,416,257,449	9,260,145,392	890,715,060,584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26,821,070,768	17,599,307,911	453,690,000	43,966,688,679

나. 종류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 = ㉠ + ㉢ - ㉣
		증 액 ㉢	감 액 ㉣	
합 계	1,463,658,717,313	75,965,367,040	10,276,618,259	1,529,347,466,094
토 지	964,385,358,212	44,664,624,301	9,573,835,392	999,476,147,121
건 물	127,976,469,739	27,254,367,489	422,782,867	154,808,054,361
입 목 죽	39,128,445,721			39,128,445,721
공 작 물	321,560,467,061	2,937,075,250		324,497,542,311
기 계 기 구	3,848,728,580			3,848,728,580
선 박				
항 공 기				
무 체 재 산	1,189,000			1,189,000
유 가 증 권	990,000,000			990,000,000
용 익 물 권	4,308,459,000	930,000,000	280,000,000	4,958,459,000
회 원 권	1,459,600,000	179,300,000		1,638,900,000

7.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단위 : 개,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현 황		당 해 연 도 말 보 유 액 ㉡ = ㉠ + ㉢ - ㉣
		취 득 ㉢	처 분 ㉣	
수 량	1,590	99	68	1,621
금 액	7,766,904,886	1,179,038,269	853,484,076	8,092,459,079

개 선 및 권 고 사 항

1. 예비비 지출의 절차 준수 권고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 서 명	지 출 액	예비비 지출사유
생 활 체 육 과	30,000,000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 예산 부족분 사용
도 시 개 발 과	2,419,655,000	흑석6구역 소송결과에 의한 조합납부 토지매입대금 반환
도 로 관 리 과	41,826,230	도시계획시설(도로) 소송 결과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도시전략사업과	119,436,690	소송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급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고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우선, 사용 요구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부서에 심사를 요청하고 예산부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사업부서가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행정관례상 예산부서에 사용요구를 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고액 소송 결과 등의 예비비 지출은 거액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 시 가능한 한 예산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건의합니다.

2. 명시이월 · 사고이월 과다 발생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주요 이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일자리경제담당관	13,148,957,650	10,832,865,660	1,514,825,300	282,028,000
사 회 적 마 을 과	4,310,120,000	2,716,090,966	414,500,000	1,018,513,140
복 지 정 책 과	9,352,710,000	8,971,668,938	110,000,000	
어 르 신 청 소 년 과	78,535,538,420	74,493,224,635	212,854,000	2,891,052,220
보 육 여 성 과	108,250,704,660	91,216,289,761	7,460,603,650	2,811,874,770
청 소 행 정 과	30,370,655,000	27,592,129,880	693,000,000	579,408,990
도 시 계 획 과	1,286,736,420	746,997,540		384,204,000
도 시 개 발 과	2,994,560,000	2,785,635,500		123,500,100
건 축 과	296,964,000	199,967,500		82,000,000
공 원 녹 지 과	11,691,763,990	7,219,777,584	1,000,000,000	2,289,450,720
건 설 관 리 과	1,047,121,000	315,444,440	628,530,000	74,168,880
안 전 치 수 과	7,393,793,000	6,125,139,480	258,592,000	814,500,000
도시전략사업과	20,127,890,400	14,704,295,750	3,097,558,000	2,265,840,220
건 강 관 리 과	13,220,939,000	11,444,037,698		38,157,480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기중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동법 제50조에서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기 사업비용은 당기 세입에서 충당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사업비 책정은 건전 재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이월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고, 예산편성 후 이월시키게 되면 다른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기관에 적시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기획예산과 및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주요 전용 및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 서	전 용		변 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사 회 적 마 을 과	1건	6,700,000	-	-
생 활 체 육 과	-	-	2건	22,370,000
교 육 문 화 과	3건	14,500,000	2건	86,182,000
부 동 산 정 보 과	-	-	3건	14,225,000
복 지 정 책 과	3건	12,700,000	-	-
사 회 복 지 과	-	-	6건	57,207,000
어 르 신 청 소 년 과	1건	1,500,000	10건	520,043,000
청 소 행 정 과	-	-	4건	382,381,000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	2건	25,200,000
건 강 관 리 과	17건	666,413,000	9건	103,900,000
보 건 의 약 과	2건	16,500,000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세부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고 변경은 세부사업 간 같은 편성목에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를 보면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변경은 실·국장이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전용 절차를 전용 요구(내부방침)는 ‘국장’으로, 결정권자를 ‘부구청장’으로 정하고 이 절차를 준수하여 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용과 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 이 제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급적 예산의 성립 이후에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결정권자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4. 예산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기획예산과)

1) 현황 및 문제점

추진 사업에 대한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내용(단위)	실적 및 목표치				해당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외연수 지원 인원(명)	목 표	45	50	65	행정지원과
	실 적	30	85	91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 실시횟수(횟수)	목 표	7	5	7	지치행정과
	실 적	12	13	17	
자원봉사교육 이수자(명)	목 표	800	921	921	자치행정과
	실 적	877	1,000	5,259	

상기 표를 분석하면 2017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2016년 실적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당위성에 의문을 가지도록 합니다.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목표치에 대한 실적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단 재무제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 건의 (기획예산과-시설관리공단)

1) 현황 및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경상전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집행예산	반납액	시비
경상전출금	15,653,347,587	901,346,413	124,636,000

그리고, 2017년도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제18기 : 2017년01월01일 ~ 12월 31일

과목	금액
1.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15,653,347,587
2. 매출원가	13,216,939,955
3. 매출총이익	2,436,407,632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436,407,632
5. 영업이익	-

시비 124백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예수금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3-2 가. 수익인식과 회계처리’에는 ‘대행사업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에 업무를 위, 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행업무 수행으로 인한 위탁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반해 공단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에는 수익으로, 집행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단의 영업성과 등의 회계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지방공기업 내,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비를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분류한다면 예수금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게 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6. 재무제표 주석표시 (재무과)

1) 현 황

2017년 동작구청의 장기투자증권 출자금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출자금	공단	도시시설 관리공단	100%	15,653,347,587	15,653,347,587	0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당기 손이익은 정산반환금을 고려하면 항상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의 차이를 정산반환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밝히는 것은 성과 공시 명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다음과 같이 대행사업수입의 정산반환금 901백만 원과 영업외수익의 정산반환금 431백만 원도 함께 표기하여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단위: 원)

구 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출자금	공단	도시시설 관리공단	100%	16,986,449,697 (1,333,102,110)	15,653,347,587	0

7.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징수과)

1)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의 최근 5년간 세입금 환급액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연도	세입금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가)	기 타 (나)	납세자 권리구제 (다)	환 급 액 (라 =가+나+다)
2017	44,691,740	166,370,000	29,082,940	240,144,680
2016	61,274,780	320,499,990	1,031,957,330	1,413,732,100
2015	50,898,650	155,072,350	7,686,460	213,657,460
2014	373,235,600	147,660,990	1,376,470	522,273,060
2013	67,210,020	93,663,630	188,550,750	349,424,400

환급액은 환급이자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동작구청의 재정력 손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행정기관 착오’, ‘기타’, ‘납세자 권리구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액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사건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인한 환급액은 납세자의 이종납부, 법령개정, 납부서 미송달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 등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기타’로 인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상기 표에 의하면, 과거에 비하여 2017년도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크기는 45백만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환급액이 커지면 이에 따른 환급이자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액 중 통제 가능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지방세수입 부과 착오, 사용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부과 착오,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착오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전문직이 대부분인 세무부서(징수과, 부과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각 과에서 별도 관리하는데다가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기적 전문 교육 강화 및 업무 보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여 이의신청 자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8. 미수납액(체납액) 등 적극적 관리 촉구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미수납액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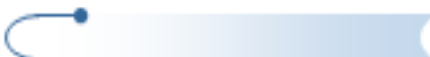
(단위: 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행 정 지 원 과	4,515,332,000	4,568,263,460	4,556,609,270	11,654,190
맑 은 환 경 과	1,475,204,000	2,650,818,290	1,485,557,170	1,165,261,120
주 택 과 (이 행 강 제 금)	1,573,014,000	3,287,536,570	2,519,021,740	768,514,830
건 축 과	602,700,000	1,452,870,570	619,373,470	833,497,100
건 설 관 리 과	2,610,280,000	3,822,077,440	2,836,395,060	985,682,380
교 통 행 정 과 (일반 , 특별회계)	2,578,978,000	11,468,510,340	2,829,507,160	8,639,003,180
보 건 기 획 과 (과 태 료)	40,000,000	44,047,000	31,363,800	12,683,2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입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다 세심한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으로 수납율을 높이고, 동작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 사항

1. 일자리경제담당관

○ 창업지원센터 운영 철저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1층은 당초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의 용도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1층을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본래의 용도대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 행정지원과

○ 임대청사 임대료 예산 지출에 대한 재검토

현재 동작구는 구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유한양행 3층, 9층, 10층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총 7개의 부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8억, 관리비 2억 3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임차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과

○ 자원봉사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모색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한때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분야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하였으나, 현재는 예전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관리 및 실질적인 활동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4.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 구민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공단 직영 건의

현재 시설투자업체와 6:4 수익배분을 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구민의 여가 생활증진과 경영효율을 위해 구예산을 지원받아 직영할 것 권고합니다.

5. 교육문화과

○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2017회계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는 동작구 관내 총 77개 학교로, 유치원 32, 초등학교 20, 중학교 16, 고등학교 7, 학력인정기관 1, 누리학교 1개소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집행결과를 지도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차등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문화행사의 적극적 지원

동작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사육신추모제, 장승배기 장승제, 충효축제 등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상징성이 있는 문화행사인 만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6. 징수과

○ 결손처분 관리 철저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결손처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 하였더라도 시효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 재산 발생 시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단위 : 원)

세입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지방세 수입	77,788,924,640	76,818,883,240	245,184,490	724,856,910
세외수입	78,270,644,391	51,011,097,411	879,827,800	26,379,719,180

7. 사회복지과

○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동작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공간이 없는 형편으로 더욱 다양한 자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공간 마련 등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복지급여 환수 및 과태료 징수 철저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과태료, 그 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 중 복지급여 미환수금이 149,628,310원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급여지급 및 환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17,998,000원에 대해서도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과태료, 그 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내역

(단위 : 원)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다=가-나)
총 계	75,000,000	332,657,500	165,031,190	167,626,310
과 태 료	52,000,000	115,986,100	97,988,100	17,998,000
그 외 수 입	17,000,000	99,111,280	41,171,660	57,939,620
지난년도수입	6,000,000	117,560,120	25,871,430	91,688,690

8. 보육여성과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방안 검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원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그 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생과의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소행정과

○ 폐기물 처리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폐기물 처리 위탁 방식이 2015년 독립채산제에서 2016년도 지역도급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요인 분석 및 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집 운반 위탁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현재 동작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6개소로 컨테이너 1개소, 조립식 건물 4개소, 공공건물 4개소 및 임차건물 7개소가 있습니다. 임차 휴게소 7개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735,000천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휴게소 임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2017.12.31. 기준)

총계	컨테이너	조립식건물	공공건물	임차건물
16개소	1	4	4	7

○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는 그 처리비용에 있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시행 수수료 균등 부과는 감량 동기를 유발하기 미흡하며, 특히 1~2인 소형세대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RFID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현재 RFID 방식은 동작구 관내 아파트 84개 단지 37,337세대 633대를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아파트 및 빌라 밀집지역에 RFID방식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관리 철저

동작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16개소 및 기타23,964개소의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분뇨 및 오니의 적정 처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의 기본입니다.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 수수료 예산이 2017년도 기준 897,172천원으로 적지않은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수료 비용이 점차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맑은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가 면제될 뿐 아니라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징수를 통해 세입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 동 차	33,743	2,898,000,000	33,586	2,791,000,000	96.3

11. 교통행정과

○ 그린파크사업 활성화 노력 요구

과거에는 보안을 우려한 건물주가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CCTV 설치와 담장경계의 개폐식 문을 설치하는 등 보안문제와 사생활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건기획과

○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동작구 세입의 재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2017.12.31. 기준)

(단위 : 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44,047,000	31,363,800	12,683,200

13. 건강관리과

○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철저

舊사당1동 청사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까지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2017년도 운영예산은 588,912천원으로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1,640,000천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동작구 지역 치매예방 및 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구차원에서 지원 건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작구 차원에서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월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4. 보건약과


○ 마약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철저로 세수증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은 동작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현황(2017.12.31. 기준)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 징 금	10,000,000원	48,862,500원	48,862,500원	0
과 태 료	3,000,000원	8,000,000원	8,000,000원	0



수 범 사 례

아무거나 프로젝트

(교육문화과)

1. 대 상 : 관내 초·중·고생 또는 관내거주 19세 미만의 5명 이상 모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청소년 스스로 모임 구성, 사업 구상, 계획, 집행, 평가를 주도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비 지원
3. 지원내용 : 사업당 300,000원 ~ 2,500,000원 활동비 차등 지원
4. 운 영
 - 네이버 웹카페 개설 및 운영, 아무거나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 입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프로그램의 내실 증진
5. 주요성과
 - 청소년 동기부여 촉진 : ‘드림업 아카데미’ 운영
 - 과도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상호성장을 돕는 심사방식으로 전환
 - 청소년 이끔이 역량 강화
6. 기 타
 - : 8개의 타구(광진, 강동, 도봉, 영등포, 노원, 마포, 성동, 양천)에서 벤치마킹

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 (기획예산과)

1. 분 야 :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2.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
3. 평가결과 : 우수구 수상 (인센티브 : 20,000천원)
4. 평가기준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집행을 기준
 - ' 17. 12. 31 기준 대상액 338.3조 원 중 300.9조 원, 89.22% 집행
(목표대비 0.02% 상승)

※ 수상현황

구분	최우수(1)	우수(4)
자치구	송파구	중랑, 강북, 은평, 동작
인센티브	3,800만 원	각 2,000만 원

2017.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1위 (징 수 과)

1. 사업분야 : 2017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2.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세무과, 38세금징수과)
3. 평가결과 : 3개사업 전부 최상위권 “수상구”
 - 시세징수 종합평가분야 : 수상구
 - 체납시세 징수평가분야 : 수상구
 - 법인 세원발굴평가분야 : 수상구
4. 수상내역 : 재원조정비 3억 1백만 원 및 기관표창 (서울시 전체 1위)

기부,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동작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

(복지정책과)

1. 사업개요

- 1) 목 적 :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2) 추진방법 : 동작복지재단 및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
- 3) 주요내용 : 일일찻집 운영, 김장 및 연탄나눔 행사, 쌀·라면 전달식, 바자회, 사랑의 저금통 사업 등

2. 모금액 : 1,203백만 원(현금 644백만 원, 현물 559백만 원)

※ 모금 목표액 1,075백만 원 대비 11.9% 증가

3. 지원현황

- 1) 지원대상 : 범정보호세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틈새계층
- 2) 연도별 현황

연도	계	모금(천원)		지원(세대/천원)	
		성금	성품	지원가구	지원액
2015	1,040,236	658,346	381,890	18,476	1,040,236
2016	1,075,323	651,691	423,632	20,738	1,075,323
2017	1,185,866	638,102	547,764	26,476	1,175.613

3) 지원내역 : 생계비, 난방비, 교육비, 의료비, 쌀, 라면, 김치 등 전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보육여성과)

1. 사업개요

- 1) 기 간 : 2017. 5월 ~ 12월
- 2) 추진방법 :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00% 추진
- 3) 지원대상 : 2개 모임 (꼬마도토리, 아껴서 남주자)

2. 추진내용

(단위 : 천원)

모임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꼬마도토리	9,500	1) 육아품앗이 : 육아교실을 통해 놀이강좌 배우기 2) 인형극놀이 : 다양한 형태의 인형극 놀이 3) 아빠랑 마실 : 아빠와 함께 바깥놀이를 통한 경험 4) 마을축제 : 공동육아 관련 체험부스 운영 등
아껴서 남주자	3,200	1) 오감발달 퍼포먼스 : 미술, 요리 등 다양한 경험 2) 체험학습 : 자연에서 숲놀이 3) 골목장터 : 아이들 장터 참여로 경제개념 갖게 하기

3.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 고
12,700	12,700	0	시비 100%

4. 기대효과

- 1) 공동육아를 통한 육아 부담 해소
- 2)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답변서

동 작 구

목 차

○ 개선 및 권고사항	57
1. 예비비 지출의 절차 준수 권고	57
2. 명시이월·사고이월 과다 발생	59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	65
4. 예산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70
5. 공단 재무제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	71
6. 재무제표의 주석표시	72
7.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73
8. 미수납액(체납액) 등 적극적 관리 촉구	74
○ 건의사항	77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선고에 의거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로 예비비 재원을 사용하였으나, ○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비비의 사용 심사를 요구 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사용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위하여 결산자료로 제출하였음. 다만, 예산부서에 사용요구를 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은 부분은 가능한 한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음. 	<p>도로관리과</p> <p>도시전략사업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2. 명시이월 · 사고이월 과다 발생 (의견서 p.26)</p> <p>○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사업비 책정은 건전 재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p> <p>○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이월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고, 예산편성 후 이월시키게 되면 다른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p> <p>○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기관에 적시에 금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함.</p>	<p>○ 일자리경제담당관 이월사업은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2017.9.29.) 및 매칭사업비 추경이 (2017.11.29.) 연도말에 확정됨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p> <p>○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비 교부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 대방동 및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신축,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의 이월, 도서관리 시스템 재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총 사업기간이 4개월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집행하도록 하겠음</p>	<p>일자리경제 담당관</p> <p>사회적 마을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후,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 중임. ○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및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은 준공지연으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였고, 구립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예산은 2017.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공사가 어려워 이월하였음. ○ 앞으로는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등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음 ○ 국공립 확충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교부되는 반면, 공유재산 심의,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투자심사, 설계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는 만큼 사고이월 등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 등에 예산교부 시기 조정을 건의하겠음 	<p>복지정책과</p> <p>어르신 청소년과</p> <p>보육여성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직송체계에 따른 생활 폐기물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장을 환경지원센터에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017.11월에 교부 받았으나, 설계 및 시공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음. ○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18년 10월에 집행 예정임. ○ 노면청소차량의 교체구매를 위해 2017.11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600,000천원을 교부 받아 2017. 12월에 발주하였으나 차량제작 기간(180일)의 부족으로 사고이월 (계약금 579,409천원)하였음. ○ 2018. 4. 3. 집행완료 하였음.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p>청소행정과</p> <p>건축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 조치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 2개 사업 정상추진 - 사고이월 : 3개 사업 집행완료 4개 사업 정상추진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분석 및 신규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부서내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상위기관 행정절차 이행단축으로 조기 발주 유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음. <p>○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이행 절차 등 도시계획 수립(용역)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나 가능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p>	<p>공원녹지과</p> <p>도시계획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이월할 시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노점 단체와의 협상지연으로 이월액 발생하였으며, '18년도 상반기 집행 예정임.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와 상도역~중앙하이츠 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굴착통제기한 저축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명시 이월한 사항으로, ○ 향후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교부 되도록 건의하고,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p>도시개발과</p> <p>건설관리과</p> <p>안전치수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17년 8월 17일에 고시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 불가피하게 이월할 시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 ○ 2017. 9. 24. 그린카 보급사업 예산 교부, 조달청 확인결과 차량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 2018. 1. 이월예산 집행. 	<p>도시 전략 사업 과</p> <p>건강관리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3.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의견서 p.28)</p> <p>○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준수해야 함.</p> <p>○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용과 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이 제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함.</p> <p>○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급적 예산의 성립 이후에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고,</p> <p>○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결정권자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함.</p>	<p>○ 네트워크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행사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으나 향후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p> <p>○ 평창동계올림픽 사전입장권 구매 및 체육회 환경 개선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변경을 하였으나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겠음.</p> <p>○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의 성립 이후에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하여 예산 편성하겠음</p>	<p>사회적 마을과</p> <p>생활체육과</p> <p>교육문화과</p> <p>부 정 동 보 산 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 사회복지과 예산변경 사유는 대부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국·시비 증액 (교부)으로 인한 구비 매칭에 따라 예산의 변경 등이 발생 ○ 청소년증 단체발급 증가로 인한 발급비용 부족으로 예산 전용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정확한 파악을 하는 등 세출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업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p>복지정책과</p> <p>사회복지과</p> <p>어 르 신 청 소 년 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사업에서 RFID 종량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부족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구비 2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p> <p>2018년에는 이를 감안하여 시비보조금 교부액을 목표 설치 대수에 맞게 요청하여 편성하였음.</p> <p>○ 재활용품 운반처리 민간업체 위탁이 완료되어, 재활용품을 광명시와 협약을 통하여 처리 함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반입비를 지출하였음.</p> <p>2018년에는 재활용 선별장 반입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9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p> <p>○ 강남지원회수시설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강남주민협의체의 성상조사 강화에 따른 반입 제재 발생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예산 변경하였음.</p> <p>혼합배출 금지 등 올바른 폐기물 배출 규정에 대한 주민홍보 및 대행업체 행정지도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p>	<p>청소행정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 2016. 11. 30. 동작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개편 계획 (구청장 방침 제261호, 2016. 11. 30.)에 의거 위탁 운영되었던 동작구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2017. 1. 1字 직영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간이전비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17.12.20.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구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p>도시전략 사업과</p> <p>건강관리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03 353 1273 629">○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 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 활용은 예산집행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겠음. <li data-bbox="703 801 1273 1189">○ 세출예산의 목적 외인 긴급하고 필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엔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변경(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li data-bbox="703 1249 1273 1570">○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전용과 변경을 최소화 할 것이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권고하겠음 <li data-bbox="703 1653 1273 1928">○ 또한 전용의 결정권자를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건의안은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음 	<p data-bbox="1302 353 1469 389">보건계약과</p> <p data-bbox="1302 801 1469 837">기획예산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4. 예산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의견서 p.30)</p> <p>○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를 권고함.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p>	<p>○ 예산의 성과계획서상 성과 지표 목표치 설정 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내용은 지양하고,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하겠음.</p> <p>○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소)장 책임 하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부서로부터 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합리적인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토록 하겠음</p>	<p>기획예산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5. 공단 재무제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 건의 (의견서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124백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예수금 회계처리하였음. ○ 시비를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분류한다면 예수금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기를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매년 회계결산을 수행하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등의 자금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 또한, 사업예산 결산 시 시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수금 계정을 두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권고안 대로 향후에는 시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에 예수금 지출 상세내용을 첨부토록 하겠음. 	<p>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6. 재무제표 주식표시 (의견서 p.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동작구의 장기 투자 증권 출자금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를 보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당기손이익은 정산반환금을 고려하면 항상 '0' 일 수밖에 없음. ○ 이는 손익의 차이를 정산 반환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으로 세부내역을 밝히는 것은 성과 공시 명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대행사업수입의 정산반환금 901백만 원과 영업외수익의 정산반환금 431백만 원도 함께 표기하여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기를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의 규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게 되어 있음. ○ 현재 자치단체 재무제표 규정 서식에는 피투자기관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요약 정보만 기재되며, 총수익에는 정산반환금을 차감한 최종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향후, 의견 수렴시 피투자기관의 경영성과에 총수익 기재시 정산 반환금도 함께 기재하여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행정 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재무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7.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의견서 p.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의 경우 각 과에서 별도 관리 하는데다가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기적 전문 교육 강화 및 업무 보직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함. ○ 또한,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여 이의 신청 자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업무의 직무전문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징수과 세외수입 담당자의 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기 인사이동 시 직무 시스템 관련 집합교육 외 부진 부서에 대한 일대일 맞춤교육을 병행하여 최단기간 내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이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 오류와 착오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의 신청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착오 부과 및 부과취소 등으로 인한 환급 이자 발생문제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징 수 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p>8. 미수납액(체납액) 등 적극적 관리 촉구 (의견서 p.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입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함. ○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다 세심한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으로 수납율을 높이고, 동작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과 미수납액 11,654,190원 중 4,728,910원은 2018.1.1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부과대상기간 정정 요청에 의거 2018.1.16. <u>전액감액처리 완료</u> 하였으며, ○ 납기일 미도래분(납기 2018.3.31.)인 구유재산 유상사용료 3,351,880원은 <u>2018.3.22. 완납처리</u> 하였음. ○ 2005년 문화복지센터 대관사용료 체납분 258,120원 및 소송비용 체납분 3,315,280원은 체납고지 3회 이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25호에 의거 <u>현재 징수과로 이관되어 체납관리 중임</u> ○ 과년도 체납금은 관리부서에서 체납 관리방안 강구 조치 ○ 체납금액에 대하여 징수독려 ·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p>행정지원과</p> <p>맑은환경과</p>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미수납액(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과와 협업하여 체납징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해 2018년 세외수입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 (매월 체납자 확인하여 독촉 고지 및 압류 조치) 및 시행중임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조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시행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p>주 택 과</p> <p>건 축 과</p> <p>건설관리과</p>

【건의사항】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일 자리 경 제 담 당 관</p>	<p>○ 창업지원센터 운영 철저 (의견서 p.39)</p> <p>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1층은 당초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용도로 만들어졌음</p> <p>그러나 현재 당초의 용도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빠른 시일 내 1층을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본래의 용도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p>	<p>○ 대방동 창업지원센터 1층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은 방문인원이 적고 활용도가 낮아 2012년 리모델링 시 상품진열창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p> <p>○ 향후 동작구 상공회와 협의하여 제품전시 공간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행정지원과</p>	<p>○ 임대청사 임대료 예산 지출에 대한 재검토 (의견서 p.39)</p> <p>현재 동작구는 구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유한양행 3층, 9층, 10층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총 7개의 부서가 입주해 있음.</p> <p>이에 따라 보증금 38억, 관리비 2억 3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임차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p>	<p>○ 유한양행 내부 자체 <u>감사결과 지적사항</u>(물가상승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임대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는 9년 동안 동결) 및 유한양행 신사옥 건립에 따른 <u>유한양행 자체 사무실 공간확보</u>와 타 입주기관(단체)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2007년 최초 계약 이후 동결된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 바,</p> <p>○ 임대보증금 인상요구분은 기 추가여입한 재원으로 <u>임대보증금을 동결</u>하고 <u>관리비 인상요구분은 최소한으로 반영</u>하여 2017.1.1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음.</p> <p>○ 현재 유한양행 내 타 입주기관(단체)에 비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가 저렴하고, 현 임대면적(3,227㎡)을 하나의 건물에 임대하면서 접근성을 동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행정타운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설치·이전비용 및 이전에 따른 주민홍보 비용 등의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자치행정과</p>	<p>○ 자원봉사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모색 (의견서 p.39)</p> <p>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한때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분야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하였으나, 현재는 예전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관리 및 실질적인 활동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p>	<p>○ 우수 자원봉사자 간담회 실시 및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 등 각종 자원봉사자 우대 정책 시행을 통해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중임.</p> <p>○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외부 전문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위해 자원봉사대학을 올해 하반기 중 재개설 등을 통해 센터 직원 및 봉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음.</p> <p>○ 특히, 개인의 봉사 실적을 활용하여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검토중으로 실질적 자원봉사자 인정격려를 통해 자원봉사자 관리와 실적 증진을 도모하겠음.</p>
<p>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p>	<p>○ 구민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공단 직영 건의 (의견서 p.39)</p> <p>현재 시설투자업체와 6:4 수익 배분을 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구민의 여가생활 증진과 경영효율을 위해 구예산을 지원받아 직영할 것을 건의함.</p>	<p>○ 향후 업체계약 만료(2020.6.30.) 후 구 예산 지원받아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교육문화과</p>	<p>○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의견서 p.40)</p> <p>2017회계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는 동작구 관내 총 77개소로, 유치원 32, 초등학교 20, 중학교 16, 고등학교 7, 학력인정기관 1, 누리학교 1개소임.</p> <p>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집행결과를 지도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차등 지원하기 바람.</p>	<p>○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해 매년 교육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p> <p>○ 교육경비 지도·점검 결과 및 학교별 교육여건 (총학생수, 저소득층 학생 수 등) 반영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 금액을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경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를 통해 교육경비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 전통문화행사의 적극적 지원 (의견서 p.40)</p> <p>동작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사육신추모제, 장승배기 장승제, 충효축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p> <p>우리구의 상징성이 있는 문화행사인 만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람.</p>	<p>○ 구민 화합의 장 마련과 우리 구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징수과	<p>○ 결손처분 관리 철저 (의견서 p.40)</p> <p>결손처분 하였더라도 시효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 재산 발생 시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관련법규 및 내부방침에 의거 결손처분 후 시효 만료 시 까지 6개월 단위로 전체 결손 자료를 대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철저한 재산 조회를 실시 하고 있고, 2개월 단위로 시효 만료 1~2개월 남은 결손자료의 재산조회 후 채권 확보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사회복지과	<p>○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의견서 p.41)</p> <p>동작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공간이 없는 형편으로 더욱 다양한 자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임.</p> <p>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공간 마련 등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p>	<p>○ 동작지역자활센터 (사업장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유휴 공간 확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사회복지과</p>	<p>○ 복지급여 환수 및 과태료 징수 철저 (의견서 p.41)</p> <p>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내역 중 복지급여 미환수금이 149,628,310원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향후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급여 지급 및 환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17,998,000원에 대해서도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p>	<p>○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급여지급 및 환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p> <p>○ 2017년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률이 84%로 높은 편이나 남은 체납액에 대해 독촉 고지 및 압류를 통하여 환수에 철저를 기하겠음</p>
<p>보육성과</p>	<p>○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방안 검토 (의견서 p.41)</p> <p>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원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그 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생과의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p>	<p>○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에 원활하게 지원 되도록 인력풀을 활성화 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청 소 행 정 과	<p>○ 폐기물 처리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의견서 p.42)</p> <p>폐기물 처리 위탁 방식이 2015년 독립채산제에서 2016년도 지역도급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요인 분석 및 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p> <p>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집 운반 위탁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p>	<p>○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 區 실정에 맞는 적정수준의 위탁비용 책정으로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아울러 근로임금 및 유가 상승 추이 등을 반영 쓰레기 봉투값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 검토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p> <p>○ 재활용품 처리량 증가와 경기침체, 원유가격 하락,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재활용 처리비용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처리량 및 처리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정처리비를 산정 후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음.</p>
	<p>○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의견서 p.42)</p> <p>현재 동작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6개소로 컨테이너 1개소, 조립식 건물 4개소, 공공건물 4개소 및 임차건물 7개소가 있음.</p> <p>임차 휴게소 7개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735,000천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휴게소 임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p>	<p>○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공간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현재 환경미화원은 77명으로 관내 각 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실은 구역별로 16개소가 운용되고 있음.</p> <p>○ 서울시의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구역과 휴게실의 거리를 100m 이내로 두기를 권장하고 있어 공공건물 휴게실 사용은 제한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임차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 (의견서 p.42)</p> <p>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는 그 처리비용에 있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함.</p> <p>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RFID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장함.</p> <p>향후 아파트 및 빌라 밀집지역에 RFID방식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람.</p>	<p>○ 우리구는 2015년부터 관내 아파트 84개 단지 37,337세대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를 시행하여 2014년 대비 배출량 17.4% 감량 및 1,164백만원의 처리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음</p> <p>○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을 위해 미설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종량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빌라 밀집지역 등 주택가 도입도 검토하겠음</p>
	<p>○ 정화조 관리 철저 (의견서 p.43)</p> <p>동작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16개소 및 기타23,964개소의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분뇨 및 오니의 적정 처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의 기본.</p> <p>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 수수료 예산이 2017년도 기준 897,172천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수료 비용이 점차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p>	<p>○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수수료는 수집된 정화조 오니를 서남물재생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분뇨처리에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를 추계하여 단가를 산정하기에 기준 단가가 매년 상이하게 산정됨.</p> <p>○ 약품비 증가 및 서남물재생센터 증설로 분뇨처리 단가가 매년 상승되고,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건물 연면적 증가에 비례하여 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수수료 비용을 점차 감소하기에는 힘든 실정임.</p> <p>○ 신규 정화조 설치 시 과대설계 방지, 적극적인 청소 주기 연장을 통하여 분뇨 발생량을 저감토록 노력하여,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수료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말은 환경과</p>	<p>○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의견서 p.43)</p> <p>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가 면제될 뿐 아니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p> <p>부과대상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징수를 통해 세입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람.</p>	<p>○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려와 독촉 고지서 발송 후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외에 납부 독촉 안내문을 발송,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p>교통 행정과</p>	<p>○ 그린파킹사업 활성화 노력 요구 (의견서 p.43)</p> <p>과거에는 보안을 우려한 건물주가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CCTV 설치와 담장 경계의 개폐식 문을 설치하는 등 보안문제와 사생활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p>	<p>○ 현재 담장 허물기 신청지 6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는 완료하였음.</p> <p>○ 그 중 지원기준 부적합, 신청 취소 등 48개를 제외한 17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음.</p> <p>○ 앞으로도 사업 신청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보건기획과	<p>○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의견서 p.44)</p> <p>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동작구 세입의 재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p>	<p>○ 월별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계획에 따른 순찰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추진</p>
건강관리과	<p>○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철저 (의견서 p.44)</p> <p>舊사당1동 청사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까지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p> <p>치매지원센터의 2017년도 운영 예산은 588,912천원으로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1,640,000천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동작구 지역 치매예방 및 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p>	<p>○ 2017년 주요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인식개선교육 : 10,856명 - 치매조기검진사업 : 11,280명 - 치매등록관리사업 : 9,363명 - 인지건강센터운영 : 13,813명 <p>○ 2017년 동치미(동작구치매지킴이) 프로젝트 수상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사례 선정 -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국무총리표창 <p>○ 2018년도 예산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비 추가로 (780,000천원) 예산 대폭 확대</p> <p>○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운영되어 지역 치매예방 및 관리 운영에 더욱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음</p>

해당부서	건의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p>건강관리과</p>	<p>○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구차원에서 지원 건의 (의견서 p.44)</p> <p>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함. 최근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p> <p>동작구 차원에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p>	<p>○ 보건소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 아님.</p> <p>○ 타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접종의 실효성이 낮음.</p> <p>○ 주민의 건강과 백신 접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p> <p>〈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별 질병예방효과〉</p> <table border="1" data-bbox="885 873 1452 958"> <tr> <td>연령</td> <td>60~69세</td> <td>70~79세</td> <td>80세이상</td> </tr> <tr> <td>효능</td> <td>64%</td> <td>결과없음</td> <td>18%</td> </tr> </table> <p>※출처: 질병관리본부 '역학과 관리'</p>	연령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효능	64%	결과없음	18%
연령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효능	64%	결과없음	18%							
<p>보건약과</p>	<p>○ 마약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철저로 세수증대 (의견서 p.44)</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은 동작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임.</p> <p>해당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p>	<p>○ 과태료나 과징금은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므로 의약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업소 관리 및 세수증대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음.</p>								